

-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5] <개정 2024. 12. 30.> [시행미지정]
별표 5의 개정규정(라오스,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):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,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
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

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 (제2조제4항 단서 관련)

별표 5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(📄)을 클릭한 후 아래 주소를 클릭하거나,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십시오.

http://www.law.go.kr/BYL/grtFile/law0101752024123035120KC_000500E.xls